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2015. 12. 18.

행정위원회

1. 심 사 경 과

가. 제출일자 : 2015년 11월 12일

나. 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
다. 회부일자 : 2015년 11월 19일

라. 상정일자 : 제192회 영등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행정위원회(2015.12.9)

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 : 재정국장 서종석)

가. 제안이유

- 「지방재정법」 개정으로 회계연도 출납폐쇄기한이 2개월 단축됨에 따라 (다음연도 2.28 ⇨ 12.31) 포상금 지급대상을 조정하고, 납세자가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여 조례를 정비코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출납폐쇄기한이 2개월 단축됨에 따라 포상금 지급대상인 ‘지난 년도 체납액’에서 ‘지난 연도 체납액(부과 당해연도 종료일로 부터 2개월 미경과분은 제외)’토록 하여 지급대상을 조정(안 제2조제2항제1호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 : 김기영)

- 본 개정 조례안은 2014.5.28. 「지방재정법」 개정¹⁾으로 2015회계연도부터 출납 폐쇄 기한이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(12.31)로 폐쇄됨에 따라 세입징수 포상금의 지급대상을 ‘지난년도 체납액’에서 ‘부과 당해연도 종료일로부터 2개월 미경과분은 제외’로 하여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세입징수포상금을 조정 하려는 것임.
- 즉, 2015회계연도에 부과한 세입금에서 체납액이 발생한 경우, 부과 종료일인 2015.12.31일 이후 2개월이 경과한 2016.3.1일부터 그 체납액을 징수한 공무원이 포상금 지급대상이 됨.
- 상위법의 시행에 맞추어 시기적절하게 조례를 개정 하는 것으로 법령 체계 간에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 차질 없는 세무업무가 추진될 것으로 기대됨.

4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1) 제8조(출납 폐쇄기한 및 출납사무 완결기한) ① 지방자치단체의 출납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 폐쇄한다. 다만, 출납원이 수납한 세입금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부터 20일까지 지방자치단체 금고에 납입할 수 있으며, 일상경비는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부터 15일까지 반납할 수 있다.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 100 호
----------	---------

제출연월일 : 2015. 11.

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「지방재정법」 개정으로 회계연도 출납폐쇄기한이 2개월 단축됨에 따라 (다음 연도 2.28 ⇨ 12.31) 포상금 지급대상을 축소 조정하고, 납세자가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여 조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조문의 일부를 정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출납폐쇄기한이 2개월 단축됨에 따라 포상금 지급대상인 ‘지난년도 체납액’에서 ‘지난 연도 체납액(부과 당해연도 종료일로 부터 2개월 미경과분은 제외)’토록 하여 지급대상을 축소 조정(안 제2조제2항제1호)
- 나. 납세자가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여 조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조문의 일부를 정비(안 제3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재정법」 제8조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의사항
 - (1) 규제심사 : 심사실시(대상사무 없음)
 - (2) 부패영향평가 : 평가실시(원안 동의)
 - (3) 성별영향분석평가 : 평가실시(원안 동의)

라. 기타사항

- (1) 입법예고(2015. 10. 8 ~ 10. 28, 20일간) 결과 : 의견 없음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제1호 중 “**지난년도 체납액(이하 “체납액”이라 한다)**”을 “**지난 연도 체납액(부과 당해연도 종료일로부터 2개월 미경과분은 제외하며, 이하 “체납액”이라 한다)**”으로 한다.

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**지급대상에 대해서**”를 “**지급대상자에게**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지급대상) ① (생 략)</p> <p>② 법 제138조제1항제4호 및 「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」 제62조의2에 따른 "지속적인 납부독려, 체납처분 등 특별한 노력으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"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</p> <p>1. <u>지난년도 체납액(이하 "체납액"이라 한다)을 징수한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</u></p> <p>2. (생 략)</p> <p>③ ~ ⑦ (생 략)</p> <p>제3조(지급기준) 제2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.</p> <p>1. ~ 5. (생 략)</p>	<p>제2조(지급대상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<u>지난 연도 체납액(부과 당해연도 종료일로부터 2개월 미경과분은 제외하며, 이하 "체납액"이라 한다)</u>-----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~ ⑦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3조(지급기준) ----- <u>지급대상자에게</u>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5. (현행과 같음)</p>